

한국심장재단

국내 소아심장 의료진 해외 연수 지원 규정

2019.12.1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심장재단 정관의 제 4조 1항(심장병의 예방, 연구, 교육에 관한 사업)에 의거 국내 소아심장 분야 의료인재 양성 및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해외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해외 연수라 함은 새로운 학문의 습득과 의료의 신기술에 따른 연수가 필요하여 소속대학이나 병원의 승인을 얻은 1년(12개월)간의 국외 연수 출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국내 의과대학 및 의료기관에서 소아 심장 분야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로 재직 중인 의사와 소아심장 기초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연수기간)

해외 연수 기간은 1년(12개월)으로 한다.

제2장 해외 연수

제5조 (자격)

- ① 소속기관 주임교수(임상과장)와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연수를 받을 해외 대학이나 병원 지도교수의 추천 및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신청)

상기 제 1조의 목적을 위해 소아 심장 분야 해외 연수가 필요한 의사는 “해외 연수 지원 신청서(별첨 양식)”를 매해 5월말까지 한국심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 ① 대상자 선발은 한국심장재단 ‘의료지원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② 한국심장재단은 연수를 희망하는 자를 5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까지 결정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한국심장재단은 연수 지원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소속기관 및 해당 의료인에게 통보한다.

제8조 (의무)

한국심장재단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의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①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 즉시 한국심장재단에 귀국을 알리고, 1개월 이내에 해외 연수 보고서를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한국심장재단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외 연수 후 소속기관에 복귀 후 연수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단, 소아심장 분야 발전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

어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제9조 (신분)

해외 연수 기간은 소속 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수를 마칠 경우 소속 기관은 즉시 복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단 승진, 승봉이나 재직년수 포함여부는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연수비 지원

제10조 (지원 대상 및 기간)

소아심장 분야 해외 연수에 한하며, 국내 의과대학 및 의료기관에서 소아 심장 분야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로 재직 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1년간의 연수비를 지원한다.

제11조 (지원 내용)

연수지원비와 연수자 본인의 왕복항공료(Economy Class)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연수지원비는 년4,000만원을 지원하되, 이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나. 연수자 본인에 한하여 왕복항공료(Economy Class) 실비를 지원한다.

제12조 (연수지원금 반환)

①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의료인이 귀국 후 소속기관에서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연수기간 동안 지급받은 교육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1년의 연수 기간을 채우기 못한 경우 기간에 따라 지급받은 연수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3개월 미만 연수 : 상반기 지원금 50% 반환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수의 경우 상반기 지원금만 지급
3.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연수 : 하반기 지원금 50% 반환

②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의료인이 귀국 후 소속기관에서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연수기간 동안 지급받은 연수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의무기간의 1/2미만 근무 : 50% 반환
2. 의무기간의 1/2이상~3/4미만 근무 : 25% 반환

제13조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심장재단 ‘의료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심장재단 이사장이 결정하며 이에 대해 해당 의료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국심장재단 Fellowship

국내 소아심장 의료진 해외 연수 지원 신청서

성 명 : 소속 :
전 화 : 팩스 :
핸 드 폰 : E-mail :
연구과제 :

연수기관 :

출국예정일 : 귀국예정일 :

첨부서류 :

1. 연수계획서(소정양식)
2. 이력서 및 연구업적 목록
3. 서약서(소정양식)
4. 기관장 확인서(소정양식)
5. 연수기관 초청장 사본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본인은 한국심장재단 해외연수 지원의 목적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외연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별표 2]

연 수 계 획 서

연 수 기 관 :

연 수 기 간 :

연 수 목 적 :

연 구 과 제 :

연 수 기 대 효 과 :

연수세부일정

년월일	내 용	비 고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심장재단 지원에 의한 해외연수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최선을 다하여 연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 나는 한국심장재단의 승인 없이 연수기관, 연수과제 등 당초 연수계획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한국심장재단의 승인 없이 연수기간을 단축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다음의 경우 연수지원 취소 및 배상, 소환조치를 감수하고 지체 없이 귀국하겠습니다.
 - 가. 국가 및 한국심장재단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 나.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연수가 곤란한 경우
 - 다. 연수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라. 기타 연수목표 달성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경우
5. 나는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보고서를 한국심장재단에 제출하고, 학술 논문을 발표할 경우 한국심장재단 기금의 지원을 받았음을 표시한다.

년 월 일

성명

(인)

[별표 4]

소 속 기 관 장 확 인 서

수 신 : 한국심장재단 이사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상기인을 한국심장재단 지원으로 해외연수자로 파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확인합니다.

1. 파견자에 대한 인사상, 급여상, 신분상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을 것임.
2. 연수와 관련된 각종 행정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할 것임.
3. 연수자의 연수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귀국토록 할 것임.
4. 연수자가 서약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모든 불이익을 연수자 본인이 직접 책임지도록 할 것임.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기 관 장 : (직인)

연 수 보 고 서

- 연 수 자 : (국내 소속기관 / 직책 / 성명)
- 연 수 기 간 :
- 연 수 기 관 :
- 연 수 목 적 :

- 연 수 내 용 (개요) :

- 세 부 활 용 내 용
 1. 강의/세미나/컨퍼런스
 2. 임상수행
 3. 문헌연구
 4. 그 외 활동
 - ※ 세부 보고사항은 활동을 증빙할 관련 자료 제출로 대치 가능

- 연 수 소 감 및 자 가 평 가 (연수 목적 및 기대효과 중심으로 기술) :
 - ※ 해외 연수기관의 평가서 있을 경우 제출

- 재 단 연 수 지 원 사 업 에 대 한 제 언: